

『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
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8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방 성 봉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
그 밖의 관련 상위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
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
설치및운영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
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7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○ 상위법령 조문위치 이동 반영(안 제2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종 우

○ 본 「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
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
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
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 10년 이상 미집행
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
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
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